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2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7
2.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8
가. 개정안의 내용	8
나. 검토의견	10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10
(2)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13
(3)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16
다. 관계 기관 의견	17
3. 보험료율 인상	18
가. 개정안의 내용	18
나. 검토의견	20
다. 관계 기관 의견	21

4. 자동조정장치 도입	22
가. 개정안의 내용	22
나. 검토의견	23
다. 관계 기관 의견	26
5.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정원·인건비 관련 자율성 강화 등	27
가. 개정안의 내용	27
나. 검토의견	28
다. 관계 기관 의견	30
6.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32
가. 개정안의 내용	32
나. 검토의견	33
다. 관계 기관 의견	36

I.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8.
- (3) 회 부 일 : 2024. 10. 10.

나. 제안이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체계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함.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기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운용인력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인프라 등으로 인해 투자 기회 모색 및 정보 획득에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기금 수익률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법 체계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라. 기금운용본부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7조제2항).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장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바. 국민연금 재정 계산시 기금을 70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금액 및 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인상함(안 제88조).

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u>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u>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u>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에 대하여는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 또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공무원·군인연금) 부담할 수 있도록(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¹⁾

1)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²⁾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률에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³⁾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 국가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제3조의2(국가의 책무)가 신설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국가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될 경우 현재 국가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있지 않은 국민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청년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금 충당부채를 산정·계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바로 확정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이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의견이 제시되었고,⁴⁾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되었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92.1%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아울러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76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334호), 소병훈의원(의안번호 제609호),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한정애의원(의안번호 제1056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미애의원(의안번호 제3723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8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8637호) 체계자구심사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의견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은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는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최소 복무기간(현행 6개월)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자녀당 12개월씩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6개월을</u>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u>복무기간 전체를</u> ----- -. <단서 삭제>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u> 가 있는 가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u> -----

현행	개정안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③ (생략)	----- ----- ----- ----- 자녀 1명당 12개월----- -----. <단서 삭제> <삭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현행	개정안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에 얻는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군복무·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가입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군복무크레딧(제18조), 출산크레딧(제19조) 및 실업크레딧(제19조의2) 등 총 3종의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법」 제18조⁵⁾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⁶⁾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5)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6)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가입자에 대하여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7)에 따른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며,⁸⁾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함.

□ (출산크레딧) 「국민연금법」 제19조⁹⁾에 따른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¹⁰⁾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후략)

- 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 8)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9)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10)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전략)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겨웅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때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고, 자녀가 3
 명 이상인 경우에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
 한 개월 수를 추가 산입하되, 최대 50개월까지만 산입되며,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적용되고,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으나, 그 부담 비율은 법령에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30%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는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실업크레딧) 2015년 1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¹¹⁾가 신설되
 면서 도입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¹²⁾ 이하인 구직급여¹³⁾ 수급자가 희망하

- 11)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
 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
 로 한다.
-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
 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75%¹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받는 제도임.

(2)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면서 최소 복무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면,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부수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타 직역연금에서의 군복무 가입기간 산입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2. 소득기준: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13)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1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개인 부담으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서만 개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A값의 50%에 상당하는 소득(2024년 기준 약 150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산입하여주는 등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 시행 당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예: 현역병)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보장성이 강화된 군 복무크레딧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병역의무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72조제1항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의 적용을 받는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兵)의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예: 예비역 대위의 경우 43세)에 종료되는 등 개정안이 의도한 취지에 비하여 보장성이 강화된 군복무크레딧의 수혜 범위가 과다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5)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군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 참고로, 개정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그 적용 시점은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2064년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로부터 10년간(’64~’73년) 연평균 9,630억원(2024년도 불변가격기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1,827	3,677	5,487	7,183	8,852	10,530	12,158	13,806	15,505	17,275	96,301	9,6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아울러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952호), 김예지의원(의안번호 제1093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미애의원(의안번호 제3723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명) 이후로 매년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그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자녀당 12개월씩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등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실질적인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면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되, 그 적용 시점은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려는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2045년부터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그로부터 10년간(’45~’54년) 연평균 860억원(2024년도 불변가격 기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11	37	135	365	595	823	1,183	1,530	1,812	2,105	8,595	8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현행법에 따른 상한(50개월)을 폐지하고,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2.6%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 아울러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89호), 성일종의원(의안번호 제380호),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952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미애의원(의안번호 제3723호), 김태년의원(의안번호 제4609호) 및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8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로 국고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며 연금개혁안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보험료를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2025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 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90</u> 으로 한다. ⑤ (생략)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1천분의 65</u> -----. ④ ----- ----- ----- ----- ----- <u>1천분의 130</u>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5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업주의 부담

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475
2. 2026년은 1만분의 500
3. 2027년은 1만분의 525
4. 2028년은 1만분의 550
5. 2029년은 1만분의 575
6. 2030년은 1만분의 600
7. 2031년은 1만분의 625

② 2025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95
2. 2026년은 1천분의 100
3. 2027년은 1천분의 105
4. 2028년은 1천분의 110
5. 2029년은 1천분의 115
6. 2030년은 1천분의 120
7. 2031년은 1천분의 125

나. 검토의견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¹⁶⁾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임.

□ 그런데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

-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경으로 수정 전망된 바 있음.

< 제5차 재정계산(2023) 주요 결과 >

구분	추계기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적립기금 규모)
제5차 재정계산 (2023년)	2023년 ~ 2093년	1,755조원 (204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제4차 재정계산 (2018년)	2018년 ~ 2088년	1,778조원 (2041년)	2042년	2057년 (△124조원)
제3차 재정계산 (2013년)	2013년 ~ 2083년	2,561조원 (2043년)	2044년	2060년 (△281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2년부터 13%가 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6)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행 40%(2024년 현재 42%로 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 예정)인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일시에 상향하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16년간¹⁷⁾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예정된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2024년 현재 수준(42%)으로 유지하려는 보수개혁안이 제시되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나, 인상 수준·속도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정부는 보험료율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를 제안하였는데, 20대는 16년간, 30대는 12년간, 40대는 8년간, 50대는 4년간에 걸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인상한다는 계획임.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2항¹⁸⁾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결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될 때 기본연금액을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AAM)를 국민연금에 도입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작성 시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동안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뺀 값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기본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가입자 감소율 2.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평균수명

18)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u>증가율</u>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공적연금에 적용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임금)상승률 외의 거시경제적·인구통계적 변화 등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사전에 설정한 장치로,¹⁹⁾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조정 대상이 되는 모수가 보험료율인지, 연금급여액인지, 수급개시연령인지 등에 따라 개별 국가의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는 기제가 서로 다름.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2023) 이후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이 2055년경으로 전망되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음.

19) 성혜영 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보고서』 2023-0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3.

□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기본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급여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결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제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로 나타난 n년도의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인 수급권자의 (n+1)년도 기본연금액은 103만원으로 3%만큼 인상되지만,
- 개정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하게 되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기본연금액이 인상되므로, 이 경우 (n+1)년도 기본연금액은 103만원 미만이 됨.

□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액의 인상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매번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요구되고, 대다수 국민의 은퇴 후 노후자금의 원천으로서 노후소득 보장성도 중요한 만큼,

자동조정장치의 작동 시기, 조정 대상 및 방식 등 주요 사항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작동 시기)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적립기금 잔액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이외에도 ‘수지 적자(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 발동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정 대상) 개정안은 ‘전년도 가입자 감소율’과 ‘전년도 평균수명 증가율’을 각각 조정 변수로 삼아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전 연도의 수치만을 활용할 경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에 의한 급격한 변동성이 반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근 수년간의 평균치가 조정 변수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일본은 최근 3년간 공적연금 전체 피보험자 감소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도록 하고 있음.²⁰⁾

20)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2024. 9.

□ (조정 방식) 개정안은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었을 때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각각 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그 하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합한 비율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연금급여액의 실질 가치뿐 아니라 명목 가치가 전년 대비 낮아질 수 있고, 생애에 걸친 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로 산출되는 수익비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악화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더라도 기본연금액의 명목 가치가 인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설정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본연금액의 명목 가치가 전년 대비 0.31% 이상 인상되는 경우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 수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적용 방법 및 발동 시점 등에 따라 연금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정원·인건비 관련 자율성 강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무소) ① (생략)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u><신설></u>	제27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단(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u> <u>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u> <u>제41조의2(정원·인건비 등 특례) 제31</u> <u>조에 따라 기금이사</u> <u>가 관장하는 부서</u> <u>의 정원</u> <u>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u> <u>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에 따른</u> <u>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 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 행하며,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는 기금이사²¹⁾가 관장하는 부서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2024년 8월 말 기준 약 1,140조원에 달하는 적립기금의 운용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금운용직을 기금운용본부에 채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난 5년간 50% 이상 늘어난 적립기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왔음.

<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 추이 >

(단위: 십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말)
적립기금 (시장가)	736,654	833,728	948,719	890,466	1,035,795	1,140,062

자료: 국민연금공단

- 그런데 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²²⁾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21) 「국민연금법」 제31조(기금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경영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금운용직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²³⁾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자율성 부여를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면 법률간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제1항 각 호²⁴⁾에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4)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기금운용본부 분사무소) 현행법상 기금운용본부 분사무소 설치하는 정관 변경으로도 가능하지만, 법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기금운용본부 정원·인건비) 공단(기금운용본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금운용직에 대한 별도의 초과 처우개선이 어려운 구조인데, 민간대비 열악한 보수 및 성과보상 수준 등 기금운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 구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바, 정부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논의구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 (기금운용본부 분사무소)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타 공공기관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금운용본부 정원·인건비)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원·총인건비를 관리 중인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정원·인건비를 결정할 경우 경영의 합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평가성과급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2020년 1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였음.

- (지원대상)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였다가 재개(단, 실업크레딧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고, 사업·근로소득을 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인 자
- (지원수준)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함.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

□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및 영세사업장(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

족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려면 ‘납부재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고,

지원기간도 사업장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보다 요건·기간 등에 있어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

구분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12. 7월	'16. 8월	'95. 7월	'22. 7월
근거	법 제100조의3	법 제19조의2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법 제100조의4
도입 목적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만 원/월)	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재산)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다만, '31.12.31까지 지원, 일몰제)	최대 12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현행 12개월의 지원기간을 36개월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입법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²⁵⁾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장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지역가입자의 사업·근로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연금보험료를 매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바,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의 형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득 요건도 함께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이 처음 편성된 2022년(265억 2,500만원) 이후 꾸준히 증가²⁶⁾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519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납부재개 요건이 삭제되고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도

25)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26) 265억 2,500만원('22) → 382억 1,400만원('23) → 399억 4,700만원('24) → 519억 1,200만원('25안)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이 제시된 바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시기 등에 대하여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